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79

발의연월일: 2025. 5. 12.

발 의 자: 박수현 · 윤종오 · 이개호

임오경 · 조계원 · 윤준병

이정문 · 김재원 · 황운하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비교적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재 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빈번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농가 및 어가는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목적물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정부 가 지원하는 재해보험료의 비율도 충분하지 않아 재해보험에 관한 지 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해보험대상 품목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보험가입

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5조 등).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품목 및"을 "품목 확대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 및 평가"를 "지원, 평가 및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항"을 "사항(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회 소 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목적물의 품목 수 등 보험목적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범위를"을 "범위와 품목을"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일부와"를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	의 수립·시행) ①		
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			
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			
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 · 어촌정책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	<u>3년마다</u>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재해보험의 대상 <u>품목 및</u> 대	3 <u>품목 확대 및</u>		
상 지역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u>지원</u>	4 <u>지원,</u>		
및 평가에 관한 사항	<u>평가 및 개선</u>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5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신 설>

⑥ (생략)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 략)

-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 략)
 -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 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 제 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 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

	<u>사항</u>	(산림	청	<u>장</u>
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농	림
축산식품부장관	에게	건의	하	는
사항을 포함한다	7)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 음)

(2)
이 경우 보험목적물의
품목 수 등 보험목적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생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현행 과 같음)

(2)	-
<u>범위와 품목을</u>	-
19조(재정지원) ①	-
	-
<u>100</u> 분의	6

0에 해당하는 금액과--

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 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u>.</u>
② ~ ④ (현행과 같음)